

● **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-206호**

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 등 20개 행정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22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**어려운 용어정비 및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중소기업부 소관 20개
행정규칙 일괄개정규칙(안) 행정예고**

1. 이유

행정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및 전문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, 존속기한이 임박한 행정규칙의 존속기한을 연장함

2. 주요내용

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9개 행정규칙의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, 4개 행정규칙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함

3. 의견 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부 장관(참조 : 규제개혁법무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kudos@korea.kr

2)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3차 중소벤처기업부

3) 팩스 : 044-204-7369

4)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<http://www.epople.go.kr>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(전화 : (044) 204 - 7360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훈령안

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5항제2호 중 “소자장비”를 “소자장비(자성 제거 장비)”로 하고, 같은 조제6항제2호 중 “천공”을 “천공(구멍 뚫기)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모사전송”을 “팩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탁·위탁거래 공정화지침 등 2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

제1조(「수탁·위탁거래 공정화지침」의 개정) 수탁·위탁거래 공정화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Ⅱ제2호나목 중 “기성금”을 “기성금(이미 진행된 작업 부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돈)”으로 한다.

Ⅲ제1호나목(2) 중 “기성부분의”를 “기성부분(이미 진행된 작업 부분)의”로 한다.

V 중 “2024년 4월 20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2조(「수탁·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」의 개정) 수탁·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 제목“(재검토기한)”을“(유효기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2022년 7월 21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의 기호(㉓) 중 “6하 원칙”을 “육하원칙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 등 17개 고시

일부개정고시안

제1조(「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」의 개정)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계리”를 “회계처리”로 한다.

제27조제2항 중 “반하지”를 “어긋나지”로 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여입하여”를 “재편입하여”로 한다.

제43조 중 “2024년 6월 30일”을 “2027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제2조(「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」의 개정)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지득한”을 “알게 된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수탁·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」의 개정) 수탁·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익년도”를 “다음 연도”로 한다.

제6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중 “징구”를 각각 “청구”로 한다.

제4조(「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」의 개정)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전단 중 “시달”을 각각 “통보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, 제20조제1항 및 제5항 중 “계리”를 각각 “회계처리”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(보조금의 계리)”를 “(보조금의 회계처리)”로 한다.

제5조(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」의 개정)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단서 중 “잔임 기간”을 “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」의 개정)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단서 및 제25조제5항 단서 중 “잔임 기간”을 각각 “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」의 개정)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명칭여하를 불문하고”를 “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수취”를 “수령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)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나목 중 “신용공여액”을 “신용 공여액(타인에게 빌려주어 쓰게 하는 금액)”으로 한다.

제9조(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」의 개정)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“전사적 자원관리(ERP)시스템”을 “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(ERP: 기업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)”로 한다.

제10조(「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」의 개정)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개산급”을 “추산 지급”으로 한다.

제11조(「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」의 개정)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전단 중 “익월”을 “다음 달”로 한다.

제12조(「우수 그린비즈(Green-Biz) 제도 운영규정」의 개정) 우수 그린비즈(Green-Biz) 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 용어 정의 및 해설의 [7. 에너지의 사용] 중 “습분”을 “습분(물질 내의 수분)”으로 하고, “현열”을 “현열(물체의 가열, 냉각 시 온도 변화로 나타나는 열량)”로 하며, [11. 재활용 및 폐기물] 중 “오니”를 “오니(오염된 침전물)”로 한다.

제13조(「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·공표 운영규정」의 개정)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·공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2호서식 중 “침해태양”을 “침해태양(침해를 당한 형태나 양상)”으로 한다.

제14조(「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」의 개정)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상품활동의 상품공급 및 관리 지도의 평가내용란 5) 중 “로스관리”를 “손실 관리”로 한다.

제15조(「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」의 개정)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마목의 [제작방법] 중 “형압”을 “형압(압력을 가해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듦)”으로 한다.

제16조(「벤처기업확인요령」의 개정) 벤처기업확인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4항 후단 및 제19조제1호 중 “익일”을 각각 “다음 날”로 한다.

제17조(「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 운영세칙」의 개정)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 중 “2024년 6월 30일”을 “2027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